

eUCP에서 의도하는 전자자료제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data presentation of eUCP

양의동(Yang Ui Dong)**

요약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 제시의 기준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자자료 제시의 장소, 제시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기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제시의 문제점으로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문제, 서류 심사기간,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 eUCP, UCP, 전자제시, 전자신용장

목 차	
I. 서 론 II. eUCP의 성격 1. eUCP의 법률적 성격 2. eUCP와 UCP와의 관계 III. 전자적 제시를 위한 eUCP 1. eUCP의 적용범위 2. 서류의 전자적 제시의 기준 3. 심사 및 거절의 통지	IV. 전자적 제시의 문제점 1. 표준양식 2. 전자제시자의 면책 3. 환어음 유통성 4. 서류심사기간 5. 인증기관과 방법 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무역거래 대금결제 방식으로 가장 보편화 된 것은 신용장방식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신용장이 갖는 메커니즘이 국내거래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한 무역거래에서 수출입업자 모두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60년 이상을 무역결제 수단으로 신용장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는 그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of credit : 이하 UCP라 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안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33년 UCP를 제정한 이후에 통신, 운송장비 등의 발달과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른 상관습의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개정

*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청운대학교, 국제무역정보학과 조교수

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다.¹⁾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무역거래 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전자무역의 현실화에 따라서 2000년 5월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 기술실무위원회는 향후 전자무역에 발달에 현행 UCP 500과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UCP 규칙을 갱신 혹은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은행위원회는 UCP의 “추록”²⁾으로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UCP, 전자무역, 법적 문제 그리고 운송 관련 산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³⁾을 설치하였다.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안을 승인하였고, 18개월에 걸친 작업반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추록 즉, “eUCP”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이하 eUCP라 함)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 제정 공표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종이신용장거래를 전자적 제시가 가능한 무역거래의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이 제정공포 되기까지 수 차례 관련 국제 세미나 등의 절차를 거쳐 완벽에 가까운 안을 마련하여 공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 노출되고 있으며 애매한 기준 등으로 적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CP의 출현배경과 그 특징, 적용범위, 전자제시의 심사기준 등을 UCP규정과 비교분석하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eUCP의 성격

1. eUCP의 법률적 성격

eUCP가 새롭게 제정 공표됨으로써 이를 UCP의 새로운 개정으로 보아야 할지 별도의 규칙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다.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UCP는 앞으로 계속하여 종이신용장에 대한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eUCP는 UCP의 내용을 전자적 제시를 위한 추록으로 UCP와 함께 사용되면서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⁴⁾ 이를 위해서 현행 UCP의 용어를 전자적 제시에 적용하거나, 종이문서와 전자적 제시를 혼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eUCP에서 신용장의 전자적 발행 또는 전자적 통지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시하고 있지

1) UCP는 ICC에 의해 1926년 3월 회의소 미국위원의 신용장통일규칙의 통일권고안 제출을 계기로 여러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1933년 제정되었으며, 1951년 1차 개정, 1962년 2차 개정, 1974년 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1993년 5차 개정 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2)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Version 1.0

3) 미국의 국제금융융역협회 Dan Taylor회장과 스위스의 Credit Isisse 무역금융담당이사 Rene Muller가 공동의장으로 선임되고 법학전공의 교수 등 법전문가 4명, 은행관련전문인 4명, 무역실무가 4명, 운송전문가 1명 등 19명의 위원이 참가하였다.

4)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추록(eUCP)은 전자기록 자체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Pub. 500)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않는 이유는 UCP가 오랫동안 신용장의 발행 또는 통지를 전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eUCP의 사용자들은 UCP의 여러 조항이 종이문서에 상응한 전자적 제시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eUCP는 UCP 500의 특정사항이며 서류의 전자적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규칙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eUCP와 UCP와의 관계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eUCP는 UC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자적 제시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된 추록(supplement)이다. 즉 UCP 500을 대체하기 위해서 eUCP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정한 것이다.⁵⁾ 그러므로 전자신용장은 eUCP에 적용되며 별도의 UCP적용에 대한 표시가 없어도 UCP에 적용하여야 한다.⁶⁾

eUCP와 UCP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eUCP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eUCP는 UCP에 대한 특별 규칙으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eUCP 제 2조 b항에서 Where the eUCP applies, its provis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application of the UCP라고 규정하여 eUCP가 적용을 확정된 거래에서 화환신용장과 충돌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eUCP의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나타내고 있다.

III. 전자적 제시를 위한 eUCP⁷⁾

1. eUCP의 적용범위(Scope of the eUCP)

신용장이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이와 전자문서의 혼용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UCP를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그 적용이 가능하다.⁸⁾ 그러나 일반적인 UCP조항의 적용을 위해 UCP와 eUCP 모두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eUCP는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신용장에 UCP를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또한 eUCP가 적용되는 경우 그 조항이 UCP의 적용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에는 eUCP

5) Article e1 의 Scope of the eUCP a항에서 a. 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supplement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UCP”) in order to accommodat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라고 규정하여 eUCP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1993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500)(UCP)를 보충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6) eUCP Version 1.0, Article e2, a

7)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Version 1.0

8) Article e1 b. The eUCP shall apply as a supplement to the UCP where the Credit indicates that is subject to eUCP. 즉, eUCP는 신용장 상에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 즉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0” 등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야 eUCP가 적용된다.

9) Article e1 a. A Credit subject to the eUCP(“eUCP Credit”)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

의 적용이 우선한다.¹⁰⁾ eUCP 신용장이 수익자가 종이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제시 및 종이문서 제시만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UCP는 그와 같은 제시에 적용되며 오직 종이문서만 eUCP 신용장 하에서 허용될 경우 UCP가 적용된다.¹¹⁾

신용장 본문에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추록**”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되는 버전(Version)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신용장 발행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이 적용된다. 만일 수익자가 승낙한 조건변경이 eUCP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의 조건변경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이 적용된다.¹²⁾

2. 서류의 전자적 제시(Presentation)의 기준

(1) 제시의 장소

신용장거래에서 지급 등의 업무가 직접 발행은행에서 이행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선적서류 발행 후 일정기일내에 지정된 지급(paying), 인수(accepting), 매입(negotiating)은행에 운송을 증명하는 전자기록을 유효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신용장 상에 지급·인수·매입할 은행을 지정하고 수익자에게 그 주소를 통지하여¹³⁾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전자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우편주소(street address)가 아닌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에 의해 제시·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eUCP에서는 전자제시를 위한 제시의 장소로서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를 명시하여야 한다.¹⁴⁾ 전자신용장에서 전자기록과 종이서류를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용장 상에 전자기록 제시 장소와 종이서류 제시장소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¹⁵⁾

(2) 제시 방법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수합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라 매입·지급·인수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일괄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는 선적서류를 전자송달(electronic sending) 방식에 의하여 각각의 선적서류 발행인¹⁶⁾이 제시하여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제시방식이 시간적으로나 안정성·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자제시

10) Article e1 c. If an eUCP Credit allows the Beneficiary to choose between presentation of paper documents or electronic records and it chooses to present only paper documents, the UCP alone shall apply to that presentation. If only paper documents are permitted under an eUCP Credit, the UCP alone shall apply.

11) ICC에서는 UCP의 조항과 eUCP 조항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eUCP의 각 조 번호 앞에는 “e”가 표기하고 있다.

12) Article e1 c.

13) UCP 500, Article 10 a, b.

14) eUCP e5, a. Version 1.0 An eUCP Credit allowing presentation of: i. electronic records must state a place for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ii. both electronic records and paper documents must also state a place for presentation of the paper documents.

15) 장홍운·한재필, 「전자신용장 통일규칙론」, 두남, 2002, p. 59.

16) 즉 상업송장은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선하증권은 운송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은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은행 앞으로 전송하면 전송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의 순서도 일정하지 않으며 전자기록은 독립적으로¹⁷⁾제시될 수 있으나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¹⁸⁾ 전자신용장조건에서 제시방식으로 종이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역시 수출업자가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¹⁹⁾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혼합제시(mixed presentation)의 경우 종이서류는 수익자가 수합하여 직접제출하고 전자기록은 발행자가 직접 은행에 제출한 후 모든 전자기록이 전송되면 완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미국의 George Mason University 의 James E. Byrne 교수는 종이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였다.²⁰⁾

eUCP 신용장에서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전자기록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수익자(Beneficiary)는 제시은행에게 언제 제시가 이루어지는지를 통지를 해야 은행의 입장에서 서류가 완전히 접수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통지를 완전이행통지(notice of completeness)라 한다. 이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문서로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²¹⁾ 은행은 완전이행통지의 내용과 eUCP 신용장에 규정된 내용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 완전이행통지의 내용에는 근거가 되는 전자신용장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제시는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된다. 만일 수익자의 완전이행통지가 수신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²²⁾

(3) 제시시기

UCP 500에서는 서류의 제시에 관하여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과 장소,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을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일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²³⁾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도 역시 수익자는 신용장상에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대금을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 제시의 수취를 위하여 지정된 은행이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이 수취 불능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되거나 서류의 제시기간을 경과할 수 있어 eUCP 규정상에서는 이를 은행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효기일은 그와 같은 은행이 전자기록을 수신할 수 있는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때에 제시되기 위하여 남아있는 전자기록이 완전한 통지형태일 경우 통신 또는 종이문서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전자기록이 수신하기 이전에 송신되어졌다면 기간 내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제시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도 UCP상에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은행이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의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 수익자가

17) eUCP Version 1.0, Article e5 b.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18) eUCP Version 1.0, Article e5, b

19) 장홍운외 1인, 전계서, p. 61.

20) 장홍운외 1인, 전계서, p.61.

21) eUCP Version 1.0 Article e5 c

22) eUCP Version 1.0, Article e5, c.

23) UCP 500 제42조 a항.

24) eUCP Version 1.0, Article e5, e.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유효기간이 종료하였다 해도 다음 최초의 영업일 까지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²⁵⁾ 이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제시불능의 경우와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적서류의 제시를 위한 최종일자가 은행의 휴업일(non-banking day)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첫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²⁶⁾ 그러나 그와 같이 유효기일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선적기일이 연장되지는 않는다.²⁷⁾

(4) 전자기록의 인증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면 그 기록의 진위성을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은행이 접수된 전자기록을 인증할 수 없는 기록인 경우에는 제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⁸⁾ 전자기록의 인증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기존의 종이문서의 인증(authentication)²⁹⁾ 방법은 서면상의 표시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서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명(signature), 표시(mark), 스탬프(stamp), 또는 라벨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은행은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 그 양식이나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³¹⁾ 또한 서류의 발행인에 대하여도 은행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류의(first) 유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 별도의(independent), 공적인(official), 유능한(competent), 지방의(local)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서류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신용장 조건에서 문면상(on the face) 일치하는 한 이를 수리한다.³²⁾ 그러나 전자적 제시에 있어서 인증은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적 제시자 또는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폐쇄형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 이름(user name)과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며 개방형 네트워크에서는 사전에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서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certification)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신용장 기록은 송부인의 확실한 신원(apparent identity)과 출처가 분명한 자료(apparent source), 그리고 완전함과 불변성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그러므로 전자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전자적으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송부인의 신원, 자료의 출처, 및 완전성 및 불변성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은 이러한 자료에 대하여 수리하였다고 해서 자료의 진정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25) UCP 500 Article 17.

26) UCP 500 Article 44 a.

27) UCP 500 Article 44 b.

28) eUCP Version 1.0, Article e5 f.

29) “인증”(Authentication)이라 함은 지급지시나 그 정정 또는 취소가 송신자로 지정된 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절차를 말한다.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redit Transfers 1992, Article 2-i.

30) UCP 500, Article 20-d.

31) UCP 500 Article 15 Bank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r any document(s) ...

32) UCP 500 Article 20, a.

33)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

그 자료의 수취, 인증, 및 송부자의 신원 확인의 절차를 사용하여 전자기록을 수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면책되기 때문이다.³⁴⁾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전자기록을 발송하였다면 전자기록에 대한 외관상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점검완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심사(Examination) 및 거절의 통지

전자적으로 제시된 서류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심사기간에 관한 것일 것이다. 또한 전자기록 자체에 관련된 문제와 거절통지의 심사가 전통적인 서류심사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된다.

(1) 제시된 서류의 심사기간

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완결통지를 접수하게 되면 제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³⁵⁾ 접수은행은 접수한 다음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만일 은행휴무일에 제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제시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다음 최초의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³⁶⁾ 만일 영업중임에도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수익자의 전자서류제시의 완결통지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를 위한 전자신용장의 유효기간 종료일 또는 운송서류 발행 후 허용되는 제시기간은 연장된다. 따라서 서류의 심사를 위한 기산일은 은행의 시스템이 완결통지를 접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되는 최초의 영업일로 변경된다.³⁷⁾

(2) 심사규칙

1) 하이퍼링크 자료의 심사

전자기록의 심사는 전통적인 서류심사와는 달리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자적으로 제시된 서류의 심사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과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자는 심사에 특별히 심사기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서류와는 달리 전자기록은 하이퍼링크(hyperlink)³⁸⁾ 시스템에 의한 서류작성이 가능하다.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을 참조하여 심사되어질 경우 하이퍼링크에 있는 전자기록 또는 관련시스템은 심사대상의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은행에 최초로 제시된 전자기록은 심사대상 서류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외부참조시스템의 참조를 표기하는 하이퍼링크가 있으면 이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전자기록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시점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하여 지시된 시스템으로의 접근 실패하였을 때는 신용장조건에 불일치(discrepancy)한 것으로 간주한다.³⁹⁾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을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34) eUCP, Version 1.0, Article e3, b, i.

35) eUCP Version 1.0, Article e5, e.

36) 이와 같은 경우 최초의 심사일은 휴일 후 영업일 접수 다음날이 심사의 최초 기산일이 된다.

37) eUCP Version 1.0, Article e7, a.

38) 하이퍼링크란 하이퍼 텍스트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문서내의 요소 사이의 연결을 말한다. 링크란 웹에서 지정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마우스 커서로 눌러 웹제작자가 지정해놓은 특정한 페이지 또는 특정 주소, 특정파일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게 하는 웹문서 제작방식이다.

39) eUCP Version 1.0, Article e6, a.

도 불구하고 심사시점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심사은행의 입장에서는 심사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훼손된 전자기록

인터넷 방식의 통신기술에 의한 전자서류는 송달과정에서 자료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글자가 깨져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를 위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이 훼손되었다면 은행은 제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⁴⁰⁾ 이 경우 심사기간은 중지되며 제시인이 전자기록을 재제시하면서 심사기간은 다시 시작된다.⁴¹⁾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발행은행 및 확인은행에게 재 제시 요청에 대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정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⁴²⁾ 그러나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에는 위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전자기록을 재제시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재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⁴³⁾ 30일의 계산은 기산일에서 말일에 이르는 국정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의 은행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일(calender days)을 의미한다. 은행이 전자기록의 재제시를 요구하였다고 할지라도 전자기록 심사기간의 연장에 의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이나 전자기록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⁴⁴⁾

3) 원본 및 사본(Originals and Copies)의 제시

신용장 통일규칙상에서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복사, 컴퓨터 인쇄 등과 같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육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그 밖의 다른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에 의하여 서명하여 원본서류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 되었거나 또는 원본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한 서류는 사본으로 수리하며 “정부분”(duplicate), “2부”(two fold), “2통”(two copies)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복수의 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서류 그 자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원본 1통과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전자제시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위한 요구는 하나의 전자기록 제시에 의하여 충족되어 진다.⁴⁶⁾ 또한 서류의 인증은 전자제시의 인증으로 가능할 것이다.

4) 전자기록의 발행일자(Date of Issuance)

전자기록이 특정한 발행일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발행인에 의하여 송신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일자는 발행일자로 간주된다.⁴⁷⁾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40) eUCP Version 1.0, Article e11, a.

41)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i.

42) 이때 지정은행은 다음의 내용을 발행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재제시 요구 통지(notice of the request for representation) ② 심사기간산정 중단

43)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44) eUCP Version 1.0, Article e11, b.

45) UCP 500, Article 20.

46) eUCP Version 1.0, e8.

UNCITRAL의 전자 상거래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신일자는 다른 어떠한 일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송신된 일자로 간주하며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은 작성자와 수신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메시지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작성자의 지배를 벗어난 때로 한다.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데이터메시지를 수신할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또는 데이터메시지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하여 검색된 때이며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이다.⁴⁸⁾

운송을 표시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선적(shipment) 또는 발송(dispatch) 일자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전자기록의 발행일자가 선적 또는 발송 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자기록이 선적 또는 발송 일자를 표기(notation)한 경우, 표기 일자는 선적 또는 발송일자로 간주된다. 부가적인 일자내용을 보여주는 표기는 독립적으로 서명 또는 별도로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⁴⁹⁾

(3) 전자기록의 거절의 통지

1) 거절의 기준

은행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할 때에 신용장에서 규정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문면상(on the face)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일치하는가 여부는 이 신용장 통일규칙의 모든 조문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의 관행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서류가 문면상 상호 모순되는 경우 신용장조건에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⁵⁰⁾ 전자방식에 의한 제시에서 문면상이라 함은 전자기록의 자료내용(data content)의 심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문면상이란 그 내용상의 조건이 아니라 문언의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제시된 내용의 심사에서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에 의해 은행의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표준관행에 따라 심사한다. 즉 거래내용상 조건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전자방식으로 제시된 내용상으로 불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사소한 오타 등의 경우로 인한 문면상의 불일치는 상당일치의 원칙에 의해 수리해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 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 심사한다는 기준제시는 실제로 표준이 될만한 은행의 관례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수준이 극히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범주에 속하고 있으므로 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은행이라 할지라도 각각 그 관행이 다를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표준성” 또는 “국제성”의 시비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게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⁵²⁾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의 제 5 차 개정에서는 국제 표준관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제 전자적 제시에 관한 표준은행관행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⁵³⁾

47) eUCP Version 1.0, e9.

48)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Article 15.

49) eUCP Version 1.0, e10.

50) UCP 13, a.

51) eUCP Version 1.0, Article e3, a.

52) 한주섭, 신용장론, 동성사, 2000, p.505.

53) ICC의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작업반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상 반영된 표준은행관행에 관하여 어디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즉 신용장 통일규칙에 이미 삽입

2) 거절 및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만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전자신용장에 의해 제시한 전자기록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여 인수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은행은 서류의 인수거절과 관련된 불일치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여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거절통지(notice of refusal)를 제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⁵⁴⁾ 이를 소홀히 하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일치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⁵⁵⁾

은행이 거절통지서를 제시인에게 송부하였다면 제시인은 그 통지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30일(calender day) 이내에 전자기록 처분에 관한 지시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⁵⁶⁾ 이때 제시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처분에 관한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⁵⁷⁾ 또한 전자신용장에서 제시될 전자기록의 형식을 선택하여야 제시된 자료를 읽을 수 있을 것이며 형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가지 형식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자료 access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료를 송부하는 당사는 발행은행과 확인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정은행의 경우에도 운송인이나 보험업자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를 서류작성 형식이 맞지 않아 access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정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형식의 전자기록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서 지급, 인수, 매입, 연지급은행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이의 이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그 사실 자체가 아무런 약속(undertaking)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⁵⁸⁾

IV. 전자적 제시의 문제점

eUCP가 제정되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양식

전자기록을 제시하는 표준양식(standard form)이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시에 대한 접수 및

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는바 예를 들면 “물품명세를 표기하는 방식은 상업송장에서 신용장상의 것과 일치하여야 하나 다른 서류에는 일반명칭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모든 표준은행관행을 수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증재원에서 이들 관례를 준용하는 판결이나 판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업무지침 등의 방식으로 정하거나 자체 교육용교재 등으로 활용하거나 ICC간행물, 각종 국제상거래에 관한 문헌 등이 국제은행표준 관행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그대로 표준관행으로 인정된다. ; 한주섭, 전게서, p.506.

54) UCP 500 Article 14.

55) 장홍운의 1인, 전게서, p.88.

56)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종이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7) eUCP Version 1.0, Article e7, b.

58) 장홍운의 1인, 전게서, p.90-91.

심사과정에 자동점검(auto checking)이 문제가 된다. 현재 신용장의 표준양식은 1920년 미국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1951년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ommercial letter of credit)에 대한 표준양식이 이 채택되었으며, 1962년에 그 양식을 개정하였고, 1970년에 ICC에서 신용장 발행을 위한 표준양식⁵⁹⁾을 여섯 가지로 발행한 적이 있다. 또한 ICC는 1978년 12월에 Standard Forms Issuing for Documentary Credits⁶⁰⁾을 발간하여 신용장의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다.⁶¹⁾ 그러나 각 국의 오랜 관습과 고유한 사정 때문에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⁶²⁾ 따라서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신용장의 특성에 맞는 신용장의 양식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자제시자의 면책범위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은행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용장의 당사자인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로서의 수출·입업자 입장에서 자주 주장되는 내용이다. 전자기록 내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기록내용 자체는 접수에 하자(瑕疵)가 없을지라도 컴퓨터 자체의 기능에 의해 수신거부 할 경우가 있다. 즉 전자기록 자체에 의하지 않는 불일치취급가능성이 존재한다.⁶³⁾ 이에 대한 제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심사시점에 요구된 전자기록에 대하여 지시된 시스템으로의 접근 실패하였을 때는 신용장조건에 불일치(discrepancy)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자기록이 외부의 시스템을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시점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심사은행의 입장에서 심사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의 불일치로 처리하게 되지만 서류의 제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통신망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과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 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면책 등과 같은 관점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이나 기타의 방식에 의한 구제나 면책이 필요하다.

3. 환어음 유통성의 상실

전자신용장에서는 제시의 방식이 종이서류의 제시와 전자제시 둘 다 허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신용장거래인 지면제시의 경우 접수은행은 신용장을 확인하고 서류심사를 하게 되나 혼합제시의 경우 각각 접수된 전자기록에 대하여 전자제시에 대한 조건에 대해 은행은 확인해야하며 이는 종이서류에도 각각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제시된 전자기록을 종이서류와 연계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환어음과 같은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은 종이서류로 발행이 되고 선적서류는 전자서류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유통상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네고에 의한 완전한 유통성을 갖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상징적 인도조건(Symbolic

59) Form No.1(Negotiation Form), Form No. 2(straight Form for Term Bill), Form No. 3(Straight Form for At sight Bill), Form No. 4 (Amendment, Form No. 5(전신 또는 텔레кс), Form No.6(Form No.1, 2, 3에서 스페이스가 부족할 때 사용).

60) Publication No. 323.

61) 한주섭, 전제서, pp. 271-272.

62)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에서는 신용장의 양식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표준양식에 준하는 형태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실제거래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타 은행도 이에 따르고 있다.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6, p. 397, 재인용.

63) Bill Cameron, "Bill Cameron on what remains to be done before the new eUCP takes final form",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3, July September, 2001, p.3.

Delivery)의 장점을 상실하여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기존의 기능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규정이 eUCP상에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서류심사기간의 문제

eUCP상에는 은행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심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⁶⁴⁾에서는 “Notice given within three business days is deemed to be not unreasonable and beyond seven business days is deemed unreasonable”라고 규정하여 3은행 영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3일간의 서류심사기간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⁵⁾ 그러나 eUCP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는 UCP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⁶⁶⁾ 서류의 심사기간은 UCP상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수취후 7영업일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서류의 경우에 서류심사기간이 보다 신속하기 때문에 UCP규정을 준용하기에는 다소무리가 있으며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상 전자기록의 인증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자 자료가 규정상으로는 인증될 수 없는 경우 제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⁶⁷⁾ 따라서 전자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필요하며 그에 의한 인증방식이 받아들이는 상관습이 형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기관에서의 인증은 상대방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상당한 제약적 요소가 될 것이며 국제적인 인증기관인 베리사인⁶⁸⁾, 사이버트러스트⁶⁹⁾, RSA security 등등과 인증관행으로 ICC GUID E70(디지털 인증되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일반관례)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국제 표준화 된 관행으로 수용될지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⁷¹⁾

V. 결론

64)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98.

65) eUCP의 1차 시안에서는 “전자기록만 제시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은 최소 3일 최장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설의뢰인에게 하자 면제를 문의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었으며, 2차안과 3차안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전자기록만 제시되는 경우 전자기록의 검사, 전자기록의 거절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수익자의 제시완료통지 영업일 이후 5 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66) eUCP Version 1.0, Article e2, a.

67) eUCP Version 1.0, Article 5, 6항

68) VeriSign.

69) Cyber Trust.

70) 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71) 김종철, “eUCP와 국제표준관습”, 2002년도 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pp. 43-44.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은 이제 6개월 남짓 시행하여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자신용장의 형태는 은행 간에 SWIFT방식으로 시행되어 이미 상당기간 이용되었으며 최근 전자신용장의 은행간 통지뿐만 아니라 종이서류의 전자적 제시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통합되어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신용장은 무역거래에 결제의 전자화라는 필연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장의 기능은 단순한 결제수단 뿐만 아니라 금융적 수단으로서도 그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⁷²⁾ 앞으로도 상당기간 병행하여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거래의 성격이 단순한 대금지급을 위한 경우에는 전자신용장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며 환어음의 유통성을 요하는 금융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래에서는 기존의 신용장방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은 환어음의 완전한 유통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완전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제시에 기준과 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시의 장소에 있어서 종이서류방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주소가 기준이 되지만 혼합제시인 경우에는 우편주소도 함께 명시해야 하며 제시의 방법에 대한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기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전자제시를 위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범위상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상실, 서류심사기간의 문제,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eUCP는 무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자, 운송인, 보험업자 등의 실무진과 은행 및 관련기관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현재 미진한 수준인 전자무역거래가 보다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학문적 연구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성사, 2000.
- 김종철, “eUCP와 국제표준관습”, 2002년도 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 대한상공회의소, eUCP와 ICC신용장거래 해석에 관한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 ICC 한국위원회, 2002.
- 4.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6.
- 양의동, “외환어음의 금융거래적 기능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1권 2호, 1966.
- 이길남, “eUCP하에서의 서류심사”, 2002 춘계국제학술대회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 임흥근, 환신용장의 법적 성질, 삼지원, 1991.
- 장홍운, 한재필, 전자신용장 통일규칙론, 두남, 2002.
- 한주섭, 신용장론, 동성사, 2000, p.505.
- 최석범, “eUCP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춘계국제학술대회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2.

72) 참고, “외환어음의 금융거래적 기능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1권 2호, 1966.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5, No.4 Autumn 1999.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6, No.1, Winter, 2000.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6, No.2, spring, 2000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6, No.3, summer, 2000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7, No.1, Winter, 2001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6, No.2, spring, 2001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3, July September, 2001.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98.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Version 1.0
UCP 500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redit Transfers 1992.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小原三佑嘉, eUCP의 意圖する 電子紀錄의 呈示に 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 29, No. 6, 2001.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http://www.boleronet/downloads/eUCPXMLGuide.pdf>
<http://www.cceweb.com>